

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4. 11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4. 11

다. 상 정 일 자 : 제127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5.4.25)상정.채택

2. 제안설명요지(박노선 세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주택
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
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결정·공시된
개별(공동)주택가격의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1의
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에 추가함

3. 관계법령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, 제16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을 해주어야하는 사항이 발생되어 그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(별표내용추가)

- 그 수수료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자가 없는 등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